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12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밀양시 C 전 1755㎡ 중 783/1755 지분에 관하여 2023. 3.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23. 4. 10. 접수 제79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오주영

별지